



영국의 생활임금과 노동조합 재활성화

이정희 (영국 워릭대학교 박사과정(노사관계 및 조직행동))

■ 머리말

영국 노동당 당수인 에드 밀리반트가 차기 선거에서 집권할 경우 다수의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을 넘어서 ‘생활임금(living wage)’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¹⁾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정부가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노동당의 판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Whitehall contracts)을 체결할 수 있는 기업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곳으로 대상이 제한되고, 생활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그 명단이 공개되는(name and shame)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다.

생활임금 이슈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영국 정부 재정지출 감축에서 비롯된 각종 사회적 임금 삭감, 일자리 감축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악화와 맞물려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5명 가운데 1명꼴인 20.6%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의 심각성²⁾도 관

1) BBC 인터넷판, 2012년 11월 5일자, “Living wage: Ed Miliband pledge over government contracts,” <http://www.bbc.co.uk/news/uk-politics-20202005>

2) OECD(2009) Labour Market Statistics, 물론 한국은 이보다 높은 25.7%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미국은 24.8%로 2위를 차지했고, 벨기에가 4.0%로 가장 낮았다. 여기서 ‘저임금 노동’은 OECD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전체 풀타임 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노동을 말한다. OECD 국가의 평균 저임금 노동 비율은 16.3%이다.

심을 촉발시킨 주요 요인이다. 영국에서 생활임금 이슈가 처음 대두된 것은 지난 2001년, 런던 동부 지역에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이 캠페인을 벌이면서부터이다. 시티즌UK와 생활임금과운데이션이 주도한 캠페인의 영향 등으로 2012년 현재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 런던시를 비롯, 정부기관, 학교, 병원, 금융권 등 140여 개 기관이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보수당 카메론 총리도 “생활임금은 실제로 현실화할 때가 된 아이디어”³⁾라고 말할 정도이다.

지난 1994년 12월, 미국 볼티모어에서 미국노동총연맹(AFL-CIO) 지역 활동가들과 지역 운동단체, 종교계 등 도시 내 조직들이 주도한 생활임금 캠페인은 미국 14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⁴⁾ 영국 내 새로운 운동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생활임금에 관한 영국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생활임금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방식을 통해 산정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노동자들의 삶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적용 확대를 위해 어떤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인가?

■ 무엇이 생활임금인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다르다. 비단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다. 생활임금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기본적인, 그러나 수용가능한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⁵⁾ 이에 비해 최저임금은 임금 산정 시 기준점이 되기는 하지만 곧바로 실질 생활비와 맞물리는 것

3) 로이터통신, 2010년 5월 4일자, “Party leaders experience people’s power in action,” <http://uk.reuters.com/article/2010/05/04/uk-britain-election-rally-idUKTRE64259C20100504>

4) 황선자 · 이철 (2008), 『생활임금운동과 노동조합』, 연구총서 2008-18,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5) Pennycook, M.(2012) *What Price a Living Wage?: Understanding the Impact of a Living Wage on Firm-level Wage Bills*, London: IPPR and Resolution Foundation.

은 아니다. 영국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은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장(market)이 견딜 수 있는 수준”⁶⁾이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⁷⁾에 따르면, 부양가족 없이 혼자 임대주택(council housing)에 사는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연간 1만 3,400파운드(약 2,340만 원)가 필요하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풀타임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연봉을 훨씬 뛰어 넘는다. 2001년 4월, 80여 개가 넘는 노조지부, 학교, 지역 조직 등의 연합체인 런던 시티즌(London Citizens)이 런던 생활임금 캠페인을 착수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생활임금 캠페인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적절한 임금(decent pay)이 세금 공제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당 등을 통한 보충적인 재분배와 맞물려 저임금과 노동빈곤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렇다면 현재 생활임금은 얼마인가? 어떤 방식으로, 누가 산정하며,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가?

■ 산정 방식과 적용 사례

영국에서 생활임금 수준은 런던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뉜다. 런던 생활임금은 런던시가, 그 외 지역은 러프버러대학 사회정책연구센터에서 책정한다. 방식도 약간 다르다. 우선 런던 지역⁸⁾을 보자. 생활임금은 2단계를 거쳐 산정된다. 첫째는 기본생활비(Basic Living Costs) 조사이다. 가구당 최소의, 그러나 용납 가능한 수준의 비용을 측정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해 어느 정도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소득분배(income distribution) 방식인데, 임금 중위값(median)의 60%를 측정하는 것이다. 2012/13년 생활임금을 예로 들면, 기본생활비용 방식으로 시간당 7.10 파운드, 소득분배 방식으로 7.80파운드가 각각 계산되었다. 이

6) Wills, J., Kakpo, N. and Begum, R.(2009), *The Business Case for the Living Wage: The Story of the Cleaning Service at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Lond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7) www.minimumincomestandard.org 참조.

8) Greater London Authority(2012), “A Fairer London: The 2012 Living Wage in London”, <http://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living-wage-2012.pdf>

〈표 1〉 유럽의 국가최저임금제(2012년 1월)

(단위 : 파운드)

	전국 최저임금(1)	런던 생활임금(2)	런던 외 생활임금	차이 (2)-(1)
2003	4.50	6.40		1.90
2004	4.85	6.50		1.65
2005	5.05	6.70		1.65
2006	5.35	7.05		1.70
2007	5.52	7.20		1.68
2008	5.73	7.45	6.88	1.72
2009	5.80	7.60		1.80
2010	5.93	7.85		1.92
2011/12	6.08	8.30	7.20	2.22
2012/13	6.19	8.55	7.45	2.36

자료 : UNISON(2012), Bargaining Factsheet: The Living Wage, 2012/13년 수치 필자 추가.

둘의 평균 7.45파운드가 빈곤선 임금(poverty threshold wage)이 된다. 생활임금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기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5%를 추가한다. 그래서 나온 값인 시간당 8.55파운드(약 14,930원)가 런던 생활임금이다.

런던 이외 지역은 러프버러대학의 최저소득기준(minimum income standard)에 따라 계산되는데, 노동자가 가난의 효과(건강 악화, 자녀 발달수준 저하, 사회적 배제 등)를 피하기 위해 벌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 이는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둘 모두 주당 37.5시간의 노동을 하고,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받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들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고 차가 없으며, 연금기여분을 납부하거나 채무상환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 이를 감안해서 계산된 금액이 7.45파운드(약 13,000원)이다.

2001년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140개가 약간 넘는다.⁹⁾ 11개 지방정부, NHS 병원 4곳, 중앙부처 1곳, 대학 14곳, 런던시 등 공

9) Hirsh, D. and Moore, R.(2011) *The Living Wage in the United Kingdom: Building on Success*, London: Citizen UK, Centre for Research in Social Policy and Living Wage Foundation.

공기관과 대학은 물론 바클레이, HSBC, 모건 스탠리, 맥쿼리, KPMG 등 금융권과 소매회사 러시(Lush), 몇몇 법률 회사들이다. 하지만 생활임금 도입을 선언한 기업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로 인해 임금이 인상된 노동자들의 수는 많지 않다. 런던의 경우, 2010년 현재 노동자 62만 2천여 명이 런던 생활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나¹⁰⁾ 2005~2011년 6년 동안 생활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는 1만여 명에 불과했다.¹¹⁾ 이는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소매점, 외식업, 여행관련 부문 등에서 생활임금 지급을 승인한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생활임금을 지지하고 있는 회계법인 KPMG는 영국 전역에 걸쳐 현재 500만 명가량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영국 노동자들의 5명 중 1명은 생활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외식업에 종사하는 웨이터나 바(bar) 근무자들의 경우 90% 이상이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노동자 규모가 적은 것은 생활임금의 적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용자들의 우려 등에서 기인한다.¹²⁾

■ 생활임금을 둘러싼 논란

생활임금이 빈곤을 퇴치할 효과적인 도구인가, 생활임금이 생산성과 이직률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등에 관한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아직 생활임금의 효과에 관한 논문이 많지 않다.¹³⁾ 따라서 이 섹션에서는 기업에의 재정 부담, 채용 및 고용유지 그리고 생산성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생활임금 효과를 다뤄 본다.

먼저 살펴볼 것은 사용자들이 제기하는 “지급할 형편이 못 된다”는 재정 부담의 정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리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공공정책연구소(IPPR)에서

10) 2010년 4/4분기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 자료에 기반한 Resolution Foundation의 분석.

11) Wills, J.(2011), *The London Living Wage: Numbers and money*, webpage, London: Queen Mary University London, <http://www.geog.qmul.ac.uk/livingwage/numbersandmoney.html>

12) Pennycook, M.(2012).

13) Wills, J. et al.(2009).

내놓은 자료¹⁴⁾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의 경우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평균 임금지급액 인상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산업부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건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은행, 식품 생산업에서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기업의 임금부담 증가분은 1% 혹은 그 이하였다. 하지만 주요 저임금 분야로 분류되는 도소매, 음식 및 약품 소매, 바와 레스토랑 등의 임금 증가분은 이보다 높은 4.7~6.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IPPR은 기업들이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면, 예를 들어 생활임금의 100%가 아닌 90%를 적용하는 것에서부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나가려 한다면 임금 증가분은 2.0~2.6%로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노조 유니손(UNISON)은 런던의 한 지방정부(Southwark Council)의 사례를 제시했다.¹⁵⁾ 이 카운슬은 2012년 예산 책정 과정에서 직접고용 노동자들은 물론, 민간으로 이관된 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들(contracted out staff)에게도 생활임금을 지급기로 결정했다. 유니손은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으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조직몰입도와 생산성 문제 역시 사용자들의 주 관심사일 터이다. 연구 결과는 채용이나 고용유지, 결근 방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런던시의 보고서에 따르면,¹⁶⁾ 생활임금 지급 기업의 사용자 80% 이상이 노동의 질을 높이는 한편, 결근율을 약 25%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3분의 2는 채용과 고용유지에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고, 70%는 생활임금이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즉 윤리적인 사용자라는 인식을 증가시켰다고 했다. 지난 2007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자산규모 영국 3위인 바클레이 은행은 식당과 청소 노동자의 고용유지 비율이 각각 54%에서 77%, 35%에서 92%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생활임금 도입으로 임금지급액이 당장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처럼 추가 채용과 이에 따른 훈련비용의 절감으로 지급액 인상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클레이 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은 단위시간당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고용의 비용을 따져야 한다”며 “우리는 왜 더 많은 기업들이 생활임금을 적용하

14) Pennycook, M.(2012).

15) UNISON(2012), *Bargaining Factsheet: The Living Wage*, London: UNISON.

16) UNISON(2012).

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재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생활임금 지급에 따른 비용의 증가는 크지 않다. 생활임금 지급이 노동자들의 자발적이나 결근 등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한편, 노동자들이 그들의 업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생활임금이 아웃소싱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 즉 하청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까지 적용되는지의 여부이다. 아웃소싱이 특히 서비스, 유통, 제조업 등에서 만연한 현실임을 감안, 생활임금 지지자들은 이 노동자들도 원청업체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하청업체 등을 포함한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전 과정에 걸쳐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과제이다. 실제 적지 않은 금융 및 법률회사들이 생활임금을 지급키로 했음에도 적용 대상 노동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은 이들 회사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은 이미 생활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다 하청업체에까지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들은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라는 소비자들의 평판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감안, 아주 적은 규모의 아웃소싱 노동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는 런던 퀸메리 대학의 생활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것¹⁷⁾이다. 이 연구는 아웃소싱됐던 청소 업무를 다시 대학으로 이관하면서 청소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한 결과 노동자와 대학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청소 노동자를 포함한 대학 노동자, 매니저 등을 상대로 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서비스 질이 나아졌다고 답했다. 물론 청소 노동자 자신들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들은 임금과 수당이 인상된 것, 좀더 나은 매니지먼트를 받으며 학교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경력개발의 기회가 많아진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청소 노동자들은 더욱 생산적으로 일하게 됐다(68%), 관리 업무가 개선되었다(63%), 더 많은 범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61%)는 점을 강조했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이 대학의 사례는 청소 업무를 다시 원청으로 복귀시키고 이들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자리의 질, 생산성, 서비스 전달 등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이는 거의 추가 비용부담 없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캠페이너들은 생활

17) Wills, J. et al.(2009).

임금의 윤리적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기본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낮은 임금은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모두에게 불행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생계비 충당을 위해 2개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난방, 통신, 건강식 등이 없는 문명화된 가정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한다.

■ 생활임금과 노동조합 재활성화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을 영국 내에 끌어들이고 적용 확대하려는 운동에 노동조합이 큰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지난 2001년 런던 동부 지역에서 생활임금 캠페인이 시작되었을 때 공공 부문노조인 유니슨(UNISON) 호머튼병원지부가 적극 동참했다. 이 지부는 주로 아웃소싱된 서비스, 즉 청소 및 식당 업무 종사자의 저임금을 개선하고 노동자 간 임금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생활임금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에 고용된 조합원들(대부분 정규직)의 이탈 방지라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실질 사용자인 병원과의 교섭을 성사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5년 만인 2006년에 생활임금은 물론 병원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NHS 전국 임금교섭의 결과를 아웃소싱된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함으로써 동등한 수준의 임금·노동조건을 보장한다는 데 합의했다.¹⁸⁾ 또한 국회의사당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2005년,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시킬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끝에 2006년에 그 목표를 달성했고, 런던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은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통해 2010년 생활임금 지급을 약속 받았다.¹⁹⁾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보인다. 노동조합은 주로 사업장 안에서 조직화 등을 통해, 다른 지역 조직들은 사업장 밖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이 진행돼 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모든 생활임금 캠페인에 노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킨메

18) Wills, J.(2009), "Subcontracted Employment and Its Challenges to Labor," *Labor Studies Journal* 34(4) pp.441~460.

19) BBC, 2012년 11월 5일자, "Q&A: The living wage," <http://www.bbc.co.uk/news/business-20204594>

리 대학에서의 캠페인은 노동조합 관여 없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 하청고용(subcontracted employment)과 노동조합 역할을 살펴본 연구²⁰⁾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아웃소싱된 청소 및 식당 업무 종사자들을 주로 타깃으로 한 2개 사업장의 생활임금 캠페인을 비교하면서 노동조합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두 곳 모두에서 ‘생활임금 적용’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실제 이들 노동자와 실질 사용자(원청)와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노동조합이 관여되지 않은 조직이 이 간극을 해소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만 초점을 둔 전통적인 모델과 오래된 언어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운동,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동맹조직들과의 연대를 통해 하청고용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국에서 커뮤니티 노조운동은 이미 이전 연구²¹⁾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이 논문은 조직 및 영향력 저하에 대처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전략, 즉 기업 성과와 노동자 만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파트너십’과, 기존 노조조직 활성화 및 노조조직 확대를 꾀하는 ‘조직화’에 더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노조운동의 활성화 역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이슈가 사업장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반의 이해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노동계급의 이해가 지역·이민·인종·종교 등의 다양한 렌즈를 통해 재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연구²²⁾와도 맞닿아 있다.

■ 맺음말

생활임금은 기본 생활비를 반영해 산정되고, 사용자들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만큼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영

20) Wills, J.(2009).

21) Wills, J. and Simms, M.(2004), “Building Reciprocal Community Unionism in the UK,” *Class & Capital* 82, pp.59~84.

22) Wills, J.(2008), “Making Class Politics Possible: Organizing Contract Cleaners in Lond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2(2) pp.305~323.

국에서는 2001년 노조, 지역 단체, 종교, 정치 조직 등이 함께 추진한 캠페인을 시작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미 140여 개 기업이 직접고용한 또는 아웃소싱된 서비스 업무 종사자에게까지 생활임금을 지급기로 하는 등 더디지만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노동당이 차기 선거공약의 하나로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약속하면서 논의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노동당 당수는 "1990년대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 지난 노동당 정부의 뛰어난 업적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생활임금이 우리 활동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직 광범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 않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들은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생활임금 지급에 따른 노동자의 조직몰입도 향상과 이에 따른 생산성의 증가라는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생활임금 캠페인은 조직률 및 영향력 저하라는 노동운동의 위기상황에서 또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원청 모기업이 아닌 하청업체에 많이 고용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단 이들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뿐 아니라 '실질 사용자'인 원청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기능할 여지도 있다. 더불어 노동자의 '이해'를 사업장 '안'으로 한정짓지 말고 지역 공동체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한편, 인구 구성 및 계급 이해의 다양성을 감안한 새로운 운동의 디딤돌로 활용할 가능성도 던져준다. **KLI**